

사무직 남성, 여성 승진 부정적

50%가량이 “능력없다”...임금 차별 공동인식

사무금융노련 조합원 의식조사

취업여성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남성들의 보수적 여성관은 그대로여서 여성의 승진, 차별임금 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서 직장여성의 70%는 승진됐을 때 '남성만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인 반면 남성의 절반 가량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재호)이 20, 30대 사무직 직원 1천6명(남 3백48명·여 6백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합원 고용실태와 의식구조에 관한 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험, 증권, 신용카드업, 투자금융 등 제2금융권 1백여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여직원 수가 많은 사업장

중심으로 실시돼 특히 관심을 모은다.

조사 결과 회사의 교육훈련 기회에서 남성 47%, 여성 64%가 여성이 성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여성들은 취업유지나 승진을 위해 동등한 교육·훈련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남성의 60%는 여성의 교육·훈련은 업무성격이나 직업관으로 볼 때 불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여성의 79.6%는 남성과 동등한 교육·훈련기회가 주어지면 남성의 업무를 해낼 수 있다고 했고 남성 51%도 그것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남녀의 업무가 나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남성들은 업무의 성격, 여성들은 사회관습을 가장 높게 지적하는 차이를 보였다.

한 직장에 다니면서도 남성과 여성은 서로 업무능력, 승급·승진, 임금 체계 등에 커다란 시각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회사의 임금체계가 남녀별로 차이가 있다는 데에는 남녀 80%가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남성들은 △남녀가 하는 일이 다르고 남성의 일이 더 비중 있으므로(56.6%) △남성이 직접적으로 생계부담을 하기 때

문(21.2%)을 내세우고, 여성들은 △남성의 생계부담(33.8%) △관습상 남녀가 동일하게 임금을 받는 일이 없기 때문(31.7%) △별다른 근거 없이(17.2%) 등을 지적하고 있어 받아들이는 입장에 큰 차이를 보였다.

승급·승진문제에 있어선 3명 가운데 2명꼴로 남녀차별 없는 승진에 동의하고 있고, 비현실적 승진제도 때문에 여성의 승진이 막혀 있다는 반응이 높았다.

이 조사를 전담한 전국사무금융노련 정강자 전문위원은 “사무직 남성들이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긴 하나, 여성의 승급·승진문제 개선에 대해서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직장에서 여성들이 평등한 위치를 얻기 위해선 여성들의 노조활동 강화와 남성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연숙 기자>

결혼·임신 이유 부당해고 진주MBC 직원 둘 복직

결혼·임신을 이유로 90년 3월 부당 해고됐던 진주 문화방송 아나운서 이주미(28)씨와 프리듀서 김정희(30)씨가 지난 1일 복직했다.

지난해 8월25일 진주 문화방송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던 두 사람은 해고기간 임금 지급과 원직 복귀를 제시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한 회사와 합의, 지난 1일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공무원 남녀구분모집 부당”

헌법정신 위배...임용령 42조 폐지 요구

차별채용 반대 공청회

9급 행정공무원 남녀 구분모집을 동일한 형태의 차별채용을 정당화하고 부추겨 남녀 고용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됐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을 강화해

야 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라는 꼬리표를 달아 남녀 구분모집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42조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오후 7시 마산 가톨릭여성회관에서 열린 ‘9급 행정공무원 여성차별 채용 반대를 위한

공청회’에서 정성기 교수(경남대 경제학)는 “서울, 경남도 등 10개 시·도의 9급 행정공무원 남녀차별모집은 교육과 취업기회의 남녀평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여성공무원수 증가를 이유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42조를 적용한 모집공고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이며 △남녀비율을 8대2로 책정한 조치는 민간기업에 의한 남녀차별의 근거를 제공해 남녀고용평등법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